

9.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과정

- 제출일자 : 2008년 2월 4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소방본부장)
- 회부일자 : 2008년 2월 4일
- 상정 및 의결
 - 제16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 -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: 2008년 2월 18일

2. 제안설명 요지

- 시민안전테마파크는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의 가상체험을 통한 소방방재교육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3조)
- 휴관일 및 개관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4조)
 - 휴관 : 1월 1일, 설날, 추석날, 매주 월요일
 - 개관시간 : 09:00~18:00
- 안전테마파크는 20명 단위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,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도록 함(안 제6조)
-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,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, 제4조)
- 재산·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(안 제12조)
-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
 -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의 가상체험을 통해 재난·재해 등의 발생시 긴급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“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”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
 - 시민안전테마파크는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의 가상체험을 통한 소방방재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고(안 제3조)
 - 1월 1일·설날·추석날·매주 월요일 등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도록 하며, 개관시간을 09:00에서 18:00까지로 하고 있으며(안 제4조)
 - 20명 단위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도록 하고 이용희망일을 2일전까지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(안 제6조)
 -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,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(안 제3조, 제4조)
 - 전시물 또는 체험시설 등 재산·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(안 제12조)
 -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(안 제13조)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각종 재해·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, 현재 동구 용수동 89-13번지 일원에 부지 14,469㎡, 연면적 5,833㎡,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250억원(국비 100억원, 시비 100억원, 국민성금 50억원)을 투자, 지난 2006년 9월 착공하여 2008년 9월 준공예정인 “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”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이는 「소방기본법」 제5조에서 시·도지사에게 소방체험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음.
- 현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유사한 안전체험관은 지난 2003년 3월 국내 최초로 시민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운영중인 “서울시민안전체험관”과 2005년 11월 개관한 “충북도민안전체험관”이 있으며,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의 경우 그 동안 유료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조례 개정을 통해 2007년 10월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.
- 안 제1조,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3조는 시민안전테마파크의 기능을 시민들이 각종 긴급상황 및 재해·재난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가상 화재연출, 응급처치 실습, 산불·지진 등의 체험 및 대피요령, 화재 진화요령 등 다양한 교육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4조는 안전테마파크의 개관 및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1월 1일·설날·추석·매주 월요일 등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개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의 경우 평소 안전체험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직장인 등 성인들을 위해 2007년 3월부터 “야간안전체험 프로그램”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, 향후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운영프로그램 개발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계층에 안전체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6조는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인원은 20명을 원칙으로 하고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으며, 입법예고기간 중 제안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,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을 할 경우 예약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와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을 무료로 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재해·재난 등 긴급 상황을 실제 체험하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
- 안 제10조는 시장이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.
- 안 제11조는 재산 및 물품관리에 있어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
- 안 제12조에서 재산·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13조는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념품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·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<p>○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추모기념물 조성계획은?</p> <p>○ 이용자의 단위인원 20명의 의미는?</p> <p>○ 1일 관람 예상인원은?</p> <p>○ 12세 이하의 어린이 관람문제와 개관시간 등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</p>	<p>○ 안전상징조형물은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추모기념물은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계획 없음.</p> <p>○ 시민안전테마파크는 5개의 관람코스가 있어 코스마다 20명씩 체험관람가능하다는 것이며, 동시에 100정도 관람 가능함.</p> <p>○ 500명 정도가 예상되며, 연간 20만명 정도가 관람할 것으로 예상됨.</p> <p>○ 시범운영 등을 통해 보완토록 하겠음.</p>

5. 토론사항

-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전원찬성)